

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관련
번 호	3242

제안일자 : 2025. 12. 17.
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에 방송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서울시 내 IT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에 방송통신시설을 신설함(안 제21조제1항제5호사목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1조제1항제5호 나목 중 “건설”을 “설치”로 하고,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방송통신시설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		<u>설치 · 운영 및 관리</u>
6. ~ 9. (생 략)	6. ~ 9. (생 략)	6. ~ 9. (개정안과 같음)
<u>10. ~ 23.</u> (생 략)	<u>&lt;삭 제&gt;</u>	

#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토지의 취득 · 개발 · 비축 ·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· 운영 및 관리
2. 토지 및 도시의 개발 · 정비 ·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 - 가. 주택건설용지, 산업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
  - 나. 도시개발사업, 도시계획시설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
  - 다.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
  - 라. 빙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
  - 마. 도시재생사업, 상권활성화사업, 시장정비사업
  - 바. 주거 · 산업 · 교육 · 연구 · 문화 · 관광 · 휴양 · 행정 · 정보통신 · 복지 · 물류 등(이하 이 목에서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의 기능을 가지는

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

-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

3. 주택(복리시설을 포함한다)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 · 개량 · 매입 · 비축 ·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· 운영 및 관리

나.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 · 개량 · 매입 ·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· 운영 및 관리

다.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4. 주거복지사업

5.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

나. 주차장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· 운영 및 관리

라. 체육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마. 관광사업의 개발 · 조성 · 운영 및 관리

바. 도심항공교통(UAM)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

사. 방송통신시설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6.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

7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

업

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·감리 등) 및

업무(조사·연구·시험·기술개발 등)

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범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사업) ① (생 략)</p> <p>1. 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<u>공급</u>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p> <p>2.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<u>공급</u>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p>	<p>제21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공급</u>(분양 또는 임대), 운영 -----</p> <p>2. 토지 및 도시의 개발 · 정비 ·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업</p> <p>가. 주택건설용지, 산업시설용 지,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 사업</p> <p>나. 도시개발사업, 도시계획시 설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</p> <p>다.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 산 개발업</p> <p>라. 빙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 정비사업</p> <p>마. 도시재생사업, 상권활성화 사업, 시장정비사업</p> <p>바. 주거 · 산업 · 교육 · 연구 · 문화 · 관광 · 휴양 · 행정 · 정보통신 · 복지 · 물류 등(이하 이 목에서 “주거 등”이라 한다)의 기능을 가 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</p>

3.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, 개량,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
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
5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·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

3. 주택(복리시설을 포함한다)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
나.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
다.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4. 주거복지사업

5.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

나. 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

	<p><u>따른 건설 ·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<u>라. 체육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<u>마. 관광사업의 개발 · 조성 ·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<u>바. 도심항공교통(UAM)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</u></p> <p><u>사. 방송통신시설 설치 · 운영 및 관리</u></p>
6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	<u>6.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</u>
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	<u>7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u>
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	<u>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</u>
9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	<u>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· 감리 등) 및 업무(조사 · 연구 · 시험 · 기술개발 등)</u>
10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	<u>&lt;삭 제&gt;</u>

## 시재생사업

11.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

### 사업의 시행

12. 주거복지사업

13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, 운영 및 관리

1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

15.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

1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17.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

18.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

19.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

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 · 운영사업

21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

22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 · 관리사

<삭제>

업

23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

있는 사업

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삭 제>

②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

-----

-----

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

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

수행할 수 있다.